

第134回(臨時會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

第2號(附錄)

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

目 次

1.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1面
2. 서울特別市鐘路區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3面
3. 서울特別市鐘路區新廳舍建立基金設置 및 運用條例(案) 審査報告書	6面
4.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 및 管轄區域에 關한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8面
5. 서울特別市鐘路區第2의 建國汎國民推進委員會設置 및 運營에 關한條例廢止條例(案) 審査報告書	9面
6.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10面
7. 2003年度 서울特別市 鐘路區 區有財産管理計劃 變更計劃(案) 審査報告書	12面
8. 서울特別市鐘路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14面
9. 서울特別市鐘路區道路占用許可 및 占用料等徵收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16面
10. 서울特別市鐘路區道路復舊原因者負擔金徵收條例中改正條例(案) 審査報告書	18面
11. 都市計劃施設(公園·水道) 決定 및 變更決定(案) 意見聽取 結果報告書	19面
○서울特別市鐘路區統·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對한 修正案	21面
12. 2003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(案) 審査報告書	23面
13. 區政質問 補充質問에 對한 書面答辯	27面

1. 서울특별시장로구의회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3 . 9 . 19

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

운 영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9월 18일 · 남재경 의원 외 5인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9월 18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4회 서울특별시중로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3. 9. 19) 상정·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조기태 의원)

가. 개정이유

○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예비적 심사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'간사'를 각각 두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회의체 내에서 '간사'라는 명칭은 그 표현이 매우 구시대적이고 부적절한 용어 표현이기에 의원의 위상과 의정활동을 행함에 있어 좀더 자긍심과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'간사'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"간사"를 "부위원장"으로 개정(안 제12조)
- 다른 규칙의 개정(부칙)
 -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48조 및 제58조의 "간사" 명칭 변경(→부위원장)

다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동법 제63조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: 검토보고서 참조
(보고자 : 전문위원 정 성 수)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: 생 략

5. 討 論 要 旨 : 없 음

6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7. 少數意見의 要旨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